

의안번호	제 171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송미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4월 9일

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송미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4월 9일
발의자 : 송미애, 전원표, 허창원,
이옥규, 연철흙, 정상교,
황규철

1. 제정이유

- 향교와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, 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향교와 서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 (안 제2조)
- 향교, 서원의 활성화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,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(안 제3조)
- 향교,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9. 3. 25 ~ 4. 5 (10일간)

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향교·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·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향교”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.
- 2.“서원”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,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종합계획 수립·시행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향교·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
2. 향교·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
3. 향교·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
4. 그 밖에 향교·서원의 정신문화·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

제4조(활성화 사업 지원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향교·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

2. 향교·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
3.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·예절 사업

제5조(사업비 지원신청)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교부결정의 취소)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·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(생략)